

창원지방법원 2024. 4. 12 선고 2023가단5178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3. 8.

판 결 선 고 2024. 4. 12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7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투자금 반환 요청 시 원금에서 5%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기로 약정(이하 ‘이 사건 반환약정’이라 한다)하고 피고에게 2023. 4. 11.부터 2023. 5. 31.까지 7,000만 원을 투자한 후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 요청을 하였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원금 7,000만 원[원고의 주장에 따르면, 원금의 5%를 공제한 6,650만 원(=원금 7,000만 원×95%)을 청구하여야 하는데,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한대로 기재한다]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원고는 이 사건 반환약정을 증명할 증거로 녹취록(갑 제2호증)을 제출하면서 “C, D, 원고가 함께 피고에게 투자를 하였고, 투자금의 반환에 관하여 C이 대표하여 피고와 통화를 하면서 별지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는데, 그 대화내용 중 피고가 ‘그래 이게 내가 이거 지금, 일단 안 되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드릴게. 내가 조금만 기다려주소.’, ‘그렇지 그래 우리 여기 돈은 얼마 안 되니까. 뭐 잘못되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담보를 잡혀서라도 주는 거는 문제가 없어’, ‘예 믿고 기다리세요. 내가 정 안되면, 집을 팔아서 드릴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’라고 말한 부분(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이다)을 보면, 이 사건 반환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.”고 주장한다.

그러나 별지 녹취록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, 피고는 원고 등 투자자들과 사이에 투자금의 1%를 적립해 놓고 그 적립금을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어기고 대부분의 적립금을 투자금으로 사용하였고, 이에 C이 불안해하며 항의를 하자, 피고는 C의 불안을 달래주기 위해 위 약속위반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일 뿐, 피고가 이 사건 반환약정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.

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반환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규도

별지